
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3. .

제안자 : 행정안전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개정안 중 특수경비원의 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것(안 제10조제2항 제1호, 제10조의2)과 관련해서는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,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현행 60세의 연령 상한을 65세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함.

개정안 중 특수경비원이 정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(안 제15조제3항) 및 시·도경찰청장이 특수경비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는 부분(안 제25조제2항·제3항)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부분들을 현행대로 수정함.
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미만인”을 “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”으로 한다.

안 제10조의2 단서 중 “다만”을 “다만,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5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고”로 한다.

안 제15조제3항 본문 중 “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,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는”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“파업·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”로 하고, “제한한다”를 “하여서는 아니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.

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각각 삭제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0조(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) ① (생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. 1.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. ~ 5. (생략) ③ (생략)	제10조(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미만인</u> ----- ----- ----- -- 2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	제10조(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</u> ----- ----- ----- -- 2. ~ 5. (개정안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
제10조의2(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)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 <u>다만,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0세가 되어 퇴</u>	제10조의2(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<u>다만,</u> ----- ----- -----	제10조의2(특수경비원의 당연 퇴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<u>다만,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65세가 되어</u>

③ 특수경비원은 <u>파업·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<단서 신설></u> ④ (생략) 제25조(보안지도·점검 등) (생략) <u><신설></u>	③ 특수경비원은 <u>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,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는 쟁의행위를 제한한다. 다만,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업무에 대해서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.</u> ④ (현행과 같음) 제25조(보안지도·점검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시·도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특수경비원의</u>	③ 특수경비원은 <u>파업·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<단서 삭제></u> ④ (개정안과 같음) 제25조(보안지도·점검 등) (개정안과 같음) <u><삭제></u>
---	---	---

<u><신 설></u>	<u>보수 수준, 지급실</u> <u>태, 근로조건 등</u> <u>처우에 관한 지도</u> <u>· 점검을 실시하여</u> <u>야 하고, 필요한</u> <u>경우 관계기관에</u> <u>특수경비원의 처우</u> <u>에 관한 실태조사</u> <u>를 요청할 수 있</u> <u>다.</u> ③ <u>공공기관이 국</u> <u>가중요시설의 물리</u> <u>적 방호 업무를 특</u> <u>수경비업체에게 위</u> <u>탁할 경우, 「근로</u> <u>기준법」과 「국가</u> <u>를 당사자로 하는</u> <u>계약에 관한 법</u> <u>률」, 통계청의 한</u> <u>국표준직업분류 등</u> <u>을 고려하여 원가</u> <u>를 산정하여야 한</u> <u>다.</u>	<u><삭 제>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1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6.

발 의 자 : 이광희 · 조계원 · 민병덕
박성준 · 노종면 · 채현일
임호선 · 김문수 · 김우영
문금주 · 임미애 · 김 윤
박지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특수경비업제도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와 관련된 업무인 특수경비업무를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.

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했음. 하지만 국가중요시설 위해방지 업무 등 업무 특성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, 불합리한 정년 규정,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.

이에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,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,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(안 제10조 등).
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60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10조의2 단서 중 “60세가”를 각각 “65세가”로 한다.

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특수경비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, 가입대상,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. 1. 18세 미만이거나 <u>60세</u> 이상 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. ~ 5. (생 략) ③ (생 략)	제10조(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----- ~~65세~~ ----- ----- 2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의2(특수경비원의 당연 퇴 직) 특수경비원이 제10조제2항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 다 만, 제10조제2항제1호는 나이가 <u>60세가</u>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는 <u>60세가</u> 된 날이 1월부터 6 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 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되 고, 제10조제2항제4호는 「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」 제2조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	제10조의2(특수경비원의 당연 퇴 직) ----- ----- -----. ----- <u>65세가</u> ----- ~~65세가~~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